영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글로컬 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

제정 2021. 02. 15.
개정 2023. 01. 31.

제1장 조직

①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업단장(위원장),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BK21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함이다.
3.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참여교수 선발·교체·해지, 참여교수 연구 실적 평가, 신진연구인력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채용, 참여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 선발 심사 등에 관여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

1. 교육연구단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 및 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하며, 자체평가 결과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사업의 발전방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기타 사항

1. 참여인력은 매 학기 사업단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3. 국내 답사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단기 국내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국외 답사는 학생 자비가 부담될 수 있다.

제2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21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위원장),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BK21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참여대학원생 정의)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4.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대학원생 정의,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
4.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지원대학원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참여대학원생을 관리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단 업무 보조 인력을 두고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대학생이 졸업예정자일 경우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으로서의 연구활동을 유지한다면, 졸업 일자와 관계없이 해당 학기 참여기간 동안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아래 [표 1]에 기재된 평가기준 및 사업단 기여도에 따라 심사를 한다.

1. 신입생의 경우 [표 1]의 평가 기준 적용 불가로 인해 첫 학기 장학금은 지급한다. 단 별도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의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재학생의 경우 경쟁 체제로 지급한다.
3. 경쟁 체제에서는 외국어 능력 및 성적(70점), 사업단 기여도(220점), 사업단 참여도(110점)에 근거한다.
4.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단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장학위원회는 당해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 및 장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BK21 연구 장학금은 매월 23일에 해당 지원 대학원생의 등록된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1. 매 학기 초 참가자격 확인 및 장학사정 절차를 거쳐 4월에 3, 4월 분의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고, 10월에 9, 10월 분의 연구 장학금을 일괄 지급한다.
2. 단장의 승인을 통해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휴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구 장학금은 수령할 수 없으며, 기수령 연구 장학금은 회수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해지) BK21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을 해지한다.

1. BK21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의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는 이를 즉시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은 자격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참여대학원생이 취업할 경우 4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날짜에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3. 참여대학원생이 휴학 및 자퇴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

1. 참여대학원생은 [표2]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하다.

제10조(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료 지원)

1. 참여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료 지원은 투고료와 심사료를 포함하여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단, 동아시아문화학과 소속 명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2. 논문게재지원금 횟수는 제한이 없다.
3. 논문게재지원금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논문복사본 또는 별쇄본 1부. 단, 신청 기간에 신분이 종료되거나 신청이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승인통지서
② 주저자와 공저자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주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
③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④ 논문게재료 및 심사 영수증 원본 1부(단독 저자)

[표1] 지원대학원생 평가 기준 및 사업단 기여도(박사, 석사)

평가 항목		세부항목			실적 기간	점수 배점
외국어 능력	외국어 시험 성적	영어: 토익 700점 이상(20점), 600점(15점), 500점(10점), 중국어: 신HSK 5급 이상(20점), 4급(15점), 3급(10점) 일본어: JLPT N2 이상(20점), N3(15점), N4(10점)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 제외			최근 2년	**20점**
성적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5	50점		직전 학기	**50점**
		4.25 초과 ~ 4.5 미만	30점			
		4.0 초과 ~ 4.25 이하	10점			
		3.5 초과 ~ 4.0 이하	5점			
		3.5 이하	0점			
논문 게재	SCI, SCIE, SSCI	단독 게재	편당 100점		직전1년	**10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70점			
		공동 게재 (주저자 외)	편당 50점			
	국제 기타 저명학술지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40점			
		공동 게재 (주저자 외)	편당 30점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단독 게재	편당 10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40점			
		공동 게재 (저자 외)	편당 30점			
단행본 (학술저서)	한국어 /외국어	단독	편당 100점		직전 학기	**100점**
		공동 (2~3인)	편당 70점			
		공동 (4인 이상)	편당 50점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1회 참여시 10점				직전 학기	**20점**
사업단 참여도	통·번역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10점**
	사업 보고서 (제안서) 작성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50점**
	사업 참여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50점**
총합계 (400)	총 _____점 / 400점					**400점**

*사업단 업무 보조 인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 활동	- 논문게재(10점) - 저서(10점) - 기타(10점) - 각 실적 건 당 5점	당해 연구기간	30%
연구 기여도	- 사업단 참여도 평가(70점)		70%
합 계	총 _____점 / 100점		100%

제3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K21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선정함에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BK21 참여교수라 함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재원에 의하여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직위 및 자격) BK21 참여교수는 영남대학교에 적을 둔 모든 교수가 대상이며,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된 교수를 말한다.

제4조(참여교수 선발 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사업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2. 사업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연구 실적 평가 기준) 사업단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 영역을 우선시 한다.

1.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등재지 및 SCI급)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환산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주저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여도를 인정하고(단일 주저자 1, 2명의 주저자 0.7, 3명 이상 주저자 0.5), 공저자는 1/N만 인정한다(N은 해당 논문의 총저자 수를 말한다).
3. 사업단 내 공저자 논문은 주저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 세부사항은 BK21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선정 방법) 1. 참여교수 선발 방법은 [표 3] 교수업적 자체평가표에 따른다.

2. 업적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3.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와 참여교수 지원 수를 결정하여 최종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BK21 참여교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와 산학공동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BK21 참여교수는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대학원의 선진화, 국제화, 특성화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단을 벤치마킹 대학의 수준에 이르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BK21 참여교수는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 연구, 취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교수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 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2.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9조(해지, 변경, 절차) 1. BK21 참여교수는 선정 기간인 1년 이내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참여 선정이 해지될 수 있다.
2. 선정 해지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교수는 이를 즉시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단장은 신속하게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해지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4. 결원된 참여교수의 충원은 선정 절차를 통해 충원될 수 있다.
5. 교체된 참여교수는 BK21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한다.

[표 3] 교수 업적 자체평가표

평가 항목		인정 점수	비고
교수 연구 역량	최근 1년간 입금된 연구비	**20~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국내 학술지(등재지) 환산 논문 편수	**15~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SCI(E) (SSCI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1인당 IF:1편당 IF = 8:2)	**7.5~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SCI(E) (SSCI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ES(1인당 IF:1편당 IF = 8:2)	**7.5~0**	
총점		**50**	

제4장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21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 4]에 따른다.

④ 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7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등급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4	5	6	7
등급	S	A	B			C	

[표 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세부 사항(배점)	실적 기간	점수
참여교수 연구 활동 실적	1) 단독저자 논문편수 1편을 15점으로 산정한다. 2) 교신저자 논문편수 1편을 10점으로 산정한다. 3)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편수 1편을 5점으로 산정한다. 4) 연구 활동 평가점수는 최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1년	**30**
사업 수행 활동	1) 대학원생 논문 지도 – 10점 2)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 10점 3) MOU 추진 및 체결 - 5점 4) 한국연구재단 및 국제학술대회 업무 참여 - 10점 5) 강의개설, 외부전문가 초빙, 외부수주프로젝트 참가 - 10점 6) 사업단 내부사업 관련 실무 수행, 단기해외연수 인솔 – 20점 7) 기타업무참여 – 5점	최근 1년	**70**
총점			**100**

제5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 활용 지침

○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조(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를 뜻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대학원 강의 및 지도 대신에 BK21 사업 참여 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 자문, 조언을 수행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BK21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산학협력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제3조(산학협력전담직원의 정의)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동아시아문화학과와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 연계·현장 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 수행 지원 등 산학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특채할 수도 있다.

② 사업단장은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사업단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제5조(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임무)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3조에 정의한 사업단 내의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한다. 단,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처우)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BK21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인건비)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며, 퇴직금 충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해촉)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 행정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BK21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행정전담인력은 BK21 사업 및,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제3조(행정전담인력의 정의) 행정전담인력이라 함은 BK21 사업, 즉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행정 인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특채할 수도 있다.

② 사업단장은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사업단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제5조(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행정전담인력은 사업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3조에 정의한 사업단의 행정 업무에 전념한다.

제7조(처우) 행정전담인력에게 지급할 보수는 BK21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인건비) ① 산학협력 활성화와 사업단 운영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며, 퇴직금 충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해촉)

① 행정전담인력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산학협력전담인력 또는 행정전담인력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기준 포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21 사업단에 소속된 산학협력전담인력과 행정전담인력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학협력전담인력과 행정전담인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산학협력전담인력과 행정전담인력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전담인력과 행정전담인력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 5]에 따른다.

④ 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표 5] 산학협력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세부 사항(배점)	실적 기간	점수
연구 활동 평가	1) 연구과제 참여도 - 10점 2) 연구 윤리 의식 수준 - 10점 3) 업무 지식 수준 - 10점 4) 독창성, 문제 해결력 - 10점	최근 1년	**40**
사업 수행 활동 평가	1) 참여교수 연구 수행 지원 - 10점 2) 각종 보고서 작성 – 20점 3) 사업단 내부 사업 실무 수행 – 10점 4) 산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 산학공동과제, 기타 - 20점	최근 1년	**60**
총점			**100**

제7장 국제협력경비 관련 지침

제1조(국제협력 지원비) 대학원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학술회의 지원

1.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학술)대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제협력경비 집행 인정 기준>

1) 4개국 이상 참여
2) 구두발표 총 논문이 1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규모의 학술대회

2. 해외 학회 참가 자격은 국내 동아시아문화학과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3. 참여 대학원생 지원 경비는 최대 250만원으로 한다.
4.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5.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6.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항공료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는 없다.
8. 대학원생(수료생 포함)은 개인적으로 해외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졸업 전 석사과정은 1회, 박사과정은 2회의 기회를 제공한다.
9. 지원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진 등재지 이상 잡지에 해당 발표 논문을 싣는 것으로 한다.
10. 학회 참가 전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국제협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단기해외연수

1.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단기해외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15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3. 대상자는 연수 전 <단기해외연수 참가 지원 신청서> 및 <단기해외연수 참가계획

서>를 제출하고, 연수 후에는 <단기해외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지원 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5.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기해외연수

1. 대학원생이 해외 대학 저명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거나 해외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학과 학생은 연 1회 개인 장기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3. 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연수 지원 국가의 초급 수준 점수를 가진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 능력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연구 능력과 학업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한다.([표 4] 참고)

   영어: 토익(TOEIC) 400점 이상
   중국어: HSK 3급 이상(180점 이상)
   일본어: JPT 430점(JLPT N3 준함) 이상 혹은 JLPT N4 이상

4. 대상자는 지도교수 의견을 포함한 연수계획서(일자별 상세계획 및 활동내역,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5. 장기연수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다.

   학기 중: 불가(단, 연구생 및 복수학위제의 경우 가능)
   방학 기간 중의 신청 및 체류기간은 입출국일 포함 20~29일로 한다.
   30일 이상 체류는 가능하나 해당 월 연구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장기연수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장기 해외 연수 신청서(일자별 상세 계획 및 활동 내역 포함), 논문계획서, 연수 결과보고서, 해당 기관에서 발송한 초청장 혹은 위탁 기관과의 협약서 및 해외 송금 계좌

7.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이며 1인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 기관과의 협약이 불가할 시 영남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예) 나 등급(일본, 중국 지역) (단위:$) 15일 이상 동일 장소 체류 시 10% 감액

항공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할인정액	
Economy	26	실비(상한액: 123)	105	49

8.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9.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10.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1.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12. 장기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사업단장은 장기연수비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시 장기연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 사업단장은 장기연수비를 해당학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13. 위탁기관은 영남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를 가리킨다.

④ 해외학자 초빙

1.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2.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3. 당해 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단에 신청하고 사업단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 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4. 초청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석학을 초빙하며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5.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6.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7.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이 기재된 <해외 학자 초빙 활용 계획서>와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 내역(<해외 학자 초빙 결과 보고서>),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9.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5] 장기해외연수 대학원생 선발 평가표

[별지 서식] 1.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평 가 항 목		평 가	비 고	담 당
학업 성적 (50%)	평균 성적	□ 50 □ 30 □ 10	학과 성적(직전 학기)	지도교수
연구 능력 (25%)	연구 실적	□ 25 □ 15 □ 5	학위논문,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지도교수
외국어 능력 (25%)	평균 성적	□ 25 □ 15 □ 5	최근 2년 공인어학성적 및 그에 준하는 어학 능력	지도교수
종합 평가		**총점:** **□ 지원 가 □ 지원 불가**	지원 여부 결정	지도교수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교육연구단(팀)명 :** (교육연구단(팀)장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연구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별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법 제15조제2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법 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관리 및 성과추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일반) 항목** - 연구자등록번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감사원 - 신한카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성과 추적, 감사 -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감사원) 참여인력의 연구자등록번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신한카드) 카드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감사원) 성과 추적, 감사 등이 완료되는 시점, (신한카드) 연구비카드 해지 이후 5년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카드와 관련한 정보 제공은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만 적용되며, 그 외는 해당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법(시행령 포함)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본인은 BK21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 및 참여인력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참여인력 정보

○ 대학명	영남대학교	○ 사업단(팀) 명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참여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참여대학원생				○	○	

(작성일) 20년 9월 일

[별지 서식] 3. (참여, 지원) 대학원생 신청서

20 학년도

(참여, 지원) 대학원생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지 도 교 수</td><td colspan="4">대학 학과</td></tr>
<tr><td>성 명</td><td></td><td>직 급</td><td></td></tr>
<tr><td rowspan="2">대 학 원 생</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d>과 정</td><td>(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기</td></tr>
<tr><td>학 번</td><td></td></tr>
<tr><td>수 혜 기 간</td><td colspan="4">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r>
<tr><td>과제수행내역
(외국인학생)</td><td colspan="4">※사업단 내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제 수행 내역 기재</td></tr>
</table>

※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자격: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까지,
석·박사는 12학기까지 가능
※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이외의 기타 지원 혜택
※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기타 지원 혜택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참여, 지원) 대학원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생 : (인)

지도교수 :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 첨부: 서약서 1부

[별지 서식] 4.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대 학 원 생	성 명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기
			학 번	
지 도 교 수	대학 학과			
	성 명		직 급	
수 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 구 계 획 상 세 내 용	- 수혜기간 중 중점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발표 계획			

※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함.

위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생 : (인)

지도교수 :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5.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자격포기 신청서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자격포기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인 적 사 항</td><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td><td>주민등록번호</td></tr>
<tr><td>한 자</td><td></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소 속</td><td colspan="3">대학(원) 학과 학번 ( )</td></tr>
<tr><td rowspan="2">지 원 사 항</td><td>수 혜</td><td colspan="3">□ 참여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td></tr>
<tr><td>기 간</td><td colspan="3">20 . . . ~ 20 . . . (개월)</td></tr>
<tr><td colspan="2">포 기 일 자</td><td colspan="3">20 . . .</td></tr>
<tr><td colspan="2">포 기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은 사유로 자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학 원 생 (인)</td></tr>
<tr><td colspan="5">위 사람의 자격포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td></tr>
</table>

[별지 서식] 6. 타 연구과제 참여 및 시간강의 승인 신청서(참여대학원생)

타 연구과제 참여 및 시간강의 승인 신청서
(참여대학원생)

대 학 원 생	성 명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기
			학 번	
지 도 교 수	○ ○ 대 학		○ ○ ○ 학 부	
	성 명		직 급	
수 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요 청 내 역	□ 타 연구과제 참여 승인요청 □ 시간강의 승인요청			
상 세 내 용	-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지원기관 등 - 시간강의 예정 학교, 학과, 강의시간 등			

※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함.
※ 참여대학원생이 타 연구과제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을 경우는 본 신청서를 작성함.
※ 참여대학원생의 주당 시간강의 시간은 내/외부, 주/야 불문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승인을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대학원생 :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7. 지원 대학원생 선발 평가표

20 학년도

지원 대학원생 선발 평가표

지 도 교 수	대학		학과	
	성 명	(서명/인)		
대 학 원 생	성 명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학기
			학 번	
수 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평 가 항 목		평 가	비 고	담 당
외국어 능력 및 성적 (70점)	평균 성적 (직전 학기)		학과 성적(직전 학기), 외국어 성적(최근 2년) 등	지도교수
사업단 기여도 (220점)	연구 실적		학위논문,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지도교수
사업단 참여도 (110점)	참여 실적		통역, 번역, 기업체 인턴, 수상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단 행사 참여 등	지도교수
종합 평가		**총점: _____점 / 400점** **□ 지원 가 □ 지원불가**	지원 여부 결정	지도교수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제체를 유지하여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BK21 지원대학원생으로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선발결과	可	사업단(팀)장 (인)	否	사업단(팀)장 (인)

[별지 서식] 8. 대학원생 연구 업적 현황 조사(석사, 박사)

대학원생 연구 업적 현황 조사(석사, 박사)

지 도 교 수	일반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성 명			
대 학 원 생	성 명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학기
			학 번	

평가 항목		세부항목			실적 기간	점수 배점	점수
외국어 능력	외국어 시험 성적	영어: 토익 700점 이상(20점), 600점(15점), 500점(10점), 중국어: 신HSK 5급 이상(20점), 4급(15점), 3급(10점) 일본어: JLPT N2 이상(20점), N3(15점), N4(10점)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 제외			최근 2년	**20점**	
성적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5	50점		직전 학기	**50점**	
		4.25 초과 ~ 4.5 미만	30점				
		4.0 초과 ~ 4.25 이하	10점				
		3.5 초과 ~ 4.0 이하	5점				
		3.5 이하	0점				
논문 게재	SCI, SCIE, SSCI	단독 게재	편당 100점		직전 1년	**10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70점				
		공동 게재 (주저자 외)	편당 50점				
	국제 기타 저명학술지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40점				
		공동 게재 (주저자 외)	편당 30점				
	국내(등재 후보지 이상)	단독 게재	편당 100점				
		공동 게재 (주저자)	편당 40점				
		공동 게재 (저자 외)	편당 30점				
단행본 (학술 저서)	한국어 /외국어	단독	편당 100점		직전 학기	**100점**	
		공동 (2~3인)	편당 70점				
		공동 (4인 이상)	편당 50점				

※연구 업적 세부 사항

구분	연번	논문/저서 제목	게재 학술지명(권, 호)/출판사	발간일
위 항목 참고	1			

학술 대회	국제학술대회 1회 참여시 10점	직전 학기	**20점**	

※연구 업적 세부 사항

구분	연번	참가국수	학술대회명	발표 논문명	개최 국가	개최일
국내/국외	1					
국내/국외	2					

사업단 참여도	통·번역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10점**	
	사업 보고서 (제안서) 작성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50점**	
	사업 참여	구체적인 내역 기입:	직전 학기	**50점**	
총합계	총 _____점		**최대 400점**		

*사업단 업무 보조 인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서식] 9. 기여도평가 및 연구수당 신청서(사업단 참여교수)

기여도 평가 및 연구수당 신청서(사업단 참여교수)

1. 과제 정보

연구 책임자	성명	손승회	소 속	문과대 역사학과
연구 과제명	BK21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연구과제번호	
연 구 기 간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평가 및 신청액

성명	연구 활동 평가(40점)				사업 수행 활동 평가(60점)								기여도 합계				수당 신청액 (원)
	단독 저자 논문 편수 (1편 20점)	교신 저자 논문 편수 (1편 15점)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 편수 (1편 5점)	계	대학원생 논문 지도 (10점)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10점)	MOU 추진 및 체결 (5점)	한국연구재단 및 국제학술대회 업무 참여 (10점)	강의개설 외부전문가 초빙 외부수주 프로젝트 참가 (10점)	사업단 내부사업 관련 실무 수행, 단기해외 연수 인솔 (10점)	기타 (5점)	계	점수	(%	순위	등급	
합 계																	0

위 같이 참여연구원 연구활동 및 기여도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에 따라 연구수당을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손 승 회 (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서식] 10. 기여도평가 및 연구수당 신청서(산학협력 전담인력)

기여도 평가 및 연구수당 신청서(산학협력 전담인력)

1. 과제 정보

연구 책임자	성명	손승회	소 속	문과대 역사학과
연구 과제명	BK21 글로컬동아시아혁신재양성교육연구단		연구과제번호	
연 구 기 간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2. 평가 및 신청액

성명	연구 활동 평가(각 항목당 10점 만점)					사업 수행 활동 평가					기여도 합계	수당 신청액 (원)
	연구과제 참여도	연구 윤리 의식 수준	업무 지식 수준	독창성 문제 해결력	계	참여교수 연구 수행 지원 (10점)	각종 보고서 작성 (20점)	사업단 내부 사업 실무 수행 (10점)	산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 산학공동과제, 기타 (20점)	계	점수	
합 계												

위 같이 참여연구원 연구활동 및 기여도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에 따라 연구수당을 신청 합니다.

201 년 2월 1일

연구책임자: 손 승 회 (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서식] 11. 연구교원 임용 제청서

연구교원 임용 제청서

<table>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만 세)</td></tr>
<tr><td>성 별</td><td></td><td>국 적</td><td></td><td>여권번호
(외국인)</td><td></td></tr>
<tr><td rowspan="4">학 력</td><td colspan="2">출 신 학 교</td><td>입학일자</td><td>졸업일자</td><td>전 공</td><td>학 위</td></tr>
<tr><td colspan="2">대 학</td><td>대학교</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학원</td><td>석 사</td><td>대학교</td><td></td><td></td><td></td><td></td></tr>
<tr><td>박 사</td><td>대학교</td><td></td><td></td><td></td><td></td></tr>
<tr><td>주요경력</td><td colspan="6"></td></tr>
<tr><td>임용자격</td><td colspan="2">연 구 경 력</td><td colspan="2">교 육 경 력</td><td colspan="2">계</td></tr>
<tr><td colspan="2">년</td><td colspan="2">년</td><td colspan="2">년</td></tr>
<tr><td>임용구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임용내용</td><td>소 속</td><td colspan="2"></td><td>제청직위</td><td colspan="2"></td></tr>
<tr><td>임용기간
(당해연도)</td><td colspan="5">20 . . 부터 20 . . 까지</td></tr>
<tr><td>특약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연구교원으로 임용코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인)</td></tr>
</table>

[별지 서식] 12. 연구교원 활용계획서

연구교원 활용계획서

1. 활용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활용기관

성 명	한글 :	영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외국인) :		
학 력	학 위 명	취 득 일	취 득 기 관
활 용 기 관	BK21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활 용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2. 공동 연구과제(활용내용)

과 제 명	
연구(사업)지원 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연구교원의 활용 결과 (재임용시 기재)	- BK21 사업단 참여교수와 협력하여 사업단 업무수행 -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연차보고서 작성 - 사업단 관련 교육/연구/행정 전반
연구교원의 활용 방안	글로컬동아시아 관련 연구 수행, 산학전담인력으로서 역할 수행
연구수당	0,000,000원/월 (퇴직금 포함시 00,000,000원/연)

위와 같이 연구교원을 활용코자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활용기관장: 영남대학교 BK21 글로컬 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별지 서식] 13. 연구교원 임용 계약서

연구교원 임용 계약서

■ 사업명: BK21PLUS 특화인재양성사업
■ 총사업기간: 2020.09.01. - 2027.08.31
■ 계약당사자 (갑): 영남대학교
(을):
(병): BK21PLUS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장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BK21PLUS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교원(산학전담인력)으로 참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다년과제로서 지원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지원이 확정될 경우 근무현황 등을 검토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을”의 역할): “을”은 연구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간에 임의 출강 또는 타 기관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을”은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병”의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3. 근무기간 중 “을”은 영남대학교의 교수복무규정을 준수한다.
4. “을”은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또는 근무 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근무기간 중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며 제반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PLUS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PLUS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제4조(참여과제명): BK21PLUS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제5조(사업수행): “을”은 한국연구재단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간의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사업단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대가): “갑”은 “을”에게 본 사업단의 연구와 산합협력에 참여하는 대가로 계약기간동

안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1. “을”의 임금은 본 사업(연구)의 사업(연구)비로 계약기간 동안 원(₩ 원(퇴직금 별도))으로 한다.

2. 임금 지급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액의 1/12월 임금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을”의 월 임금: 이백오십만원((₩3,000,000)

3.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2개월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인건비 지원금으로 원을 지급한다.

4. “을”은 최대 연 삼백만 원(₩3,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갑”은 “을”과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참여대가)에서 정한 급여 재원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되지 아니할 때
2. 본 계약 제2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연구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타 대학 또는 타 연구소에 전임으로 임용되거나 취업이 되었을 때
6. 전임연구 교수 선정기중이 되는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기타 “을”에게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강의시수제한)

1. 본 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본교에서의 강의 시수는 주당 6시간 이하로 한다.
2. 타 대학 강의는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연구소장과 주관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본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3.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남대학교 총장

을: (인)

병: BK21PLUS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별지 서식] 14. 이력서

이 력 서

사 진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현주소	
		(한자)	E-mail	@
			전화 (자 택)	
		(영문)	(사무실)	
			(휴대폰)	

학력사항	구분	입학일	졸업일	출신교			학위
				학교명	학부(과)	전공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자격면허	취득일	종류	상벌	일자	종류

병역사항	복무사항						미필	해당없음
	군별	병과	계급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미필사유	

경력사항	시작일	종료일	기관명	직위(급)	담당업무	비고

교육훈련	시작일	종료일	종류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20 년 월 일

성 명 ㊞

[별지 서식] 15. 행정전담인력 활용계획서

행정전담인력 활용계획서

▣ 활용기관명 :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10">내 용</th></tr>
<tr><td>직원현황</td><td>정규
직원</td><td>0명</td><td>계약
직원</td><td>행정
연구</td><td>0명
0명</td><td>총0
명</td><td>근로
장학
생</td><td>0명</td><td>기타</td><td>0명</td></tr>
<tr><td>채용기간</td><td colspan="10"></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10"></td></tr>
<tr><td>채용인원의
필요성</td><td colspan="10"></td></tr>
<tr><td>채용인력의
담당예정
직무</td><td colspan="10"></td></tr>
<tr><td>채용인력의
자격</td><td colspan="10"></td></tr>
<tr><td>산학협력단
계약직원 보
수책정 기준
과 상이할 경
우 사유</td><td colspan="10"></td></tr>
</table>

기관장: (인)

[별지 서식] 16.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신청서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소속</td><td colspan="2"></td><td>연락처(연구실)</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과정 또는 직급</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참가자 역할</td><td></td></tr>
<tr><td rowspan="4">학
술
회
의</td><td>회 의 명</td><td colspan="4"></td></tr>
<tr><td>주관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개최 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d>개최지</td><td></td></tr>
<tr><td>출장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발표예정
논 문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타 기관 또는 연구과제로부터
참가여비 지원 여부
(반드시 기재)</td><td>지원기관명 또는
지원연구과제</td><td>금액</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td><td></td><td colspan="2">V</td></tr>
</table>

위와 같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여코자 하오니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비 영수증, 발표자 명기 프로그램 사본 혹은 발표논문 사본 각 1부

년 월 일

확인자 연구책임자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17. 국제학술회의 참가계획서

국제학술회의 참가계획서

Ⅰ. 학술회의 개요

1. 참가목적 및 필요성

2. 학술회의의 주제 및 내용

3. 학술회의의 규모 및 성격

4. 학술회의 참가 시 수행내용

5. 참가 세부 일정(별지사용 가능)

Ⅱ. 발표 예정 논문

논문 제목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지원비	지원기관 : (재)한국연구재단(NRF) 지원구분 : 4단계 BK21사업	수혜년도 : 과제번호 :	
발표 예정 논문 요약			

[별지 서식] 18.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table>
<tr><td rowspan="2">학술회의명</td><td>국문</td><td colspan="6"></td></tr>
<tr><td>영문</td><td colspan="6"></td></tr>
<tr><td>개최 장소</td><td>개최국</td><td></td><td>도시명</td><td></td><td>참가국 수</td><td>개국</td></tr>
<tr><td>주관 기관</td><td colspan="3"></td><td>참가자 수</td><td colspan="2"></td></tr>
<tr><td>참가 기간</td><td colspan="6">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td></tr>
<tr><td>교비지원액</td><td colspan="6"></td></tr>
<tr><td>발표 논문 제 목</td><td colspan="6"></td></tr>
<tr><td>참 가 자</td><td>소속</td><td colspan="2"></td><td>성명</td><td colspan="2"></td></tr>
<tr><td>학술 회의 참가 내용</td><td colspan="6">1. 同 회의에 참가 수행한 사항:

2. 同 회의의 학술적 의의:

3. 同 회의 분야의 연구동향 및 전망:

4. 同 회의 분야의 국내현황 및 수준:

5. 기타 건의 사항</td></tr>
</table>

첨 부 : 1. 등록비 영수증 혹은 사본 1부
2. 항공료 영수증 혹은 사본 1부
3. 출입국일자가 표기된 여권 사본 1부
4. 발표자 이름이 명기된 프로그램 사본 혹은 발표논문 사본 1부

위와 같이 참가경비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그 활동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참가자 성명_____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19. 국제학술회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서

국제학술회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서

▣ 학 회 명 :
▣ 개 최 국 :
▣ 개최일자 :
▣ 참 가 자 :

<충족여부>

1. 참가국가 수: (　　)개국

2. 구두발표 논문 건 수: (　　)건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논문 수: (　　)건

4.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논문 비율: (　　)%

지도교수:　　(인)

사업단(팀)장:　　(인)

* 국제학회 인정기준 - 4단계 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12.24. 제정)
1. 4개국 이상 참여
2. 총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단, 국내 개최는 1/3 이상)
※ 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활동 지원 가능

[별지 서식] 20. 국내학술회의 참가 지원 신청서

국내학술회의 참가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소속</td><td colspan="2"></td><td>연락처(연구실)</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과정 또는 직급</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참가자 역할</td><td></td></tr>
<tr><td rowspan="4">학
술
회
의</td><td>회 의 명</td><td colspan="4"></td></tr>
<tr><td>주관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개최 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d>개최지</td><td></td></tr>
<tr><td>출장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발표예정
논 문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타 기관 또는 연구과제로부터
참가여비 지원 여부
(반드시 기재)</td><td>지원기관명 또는
지원연구과제</td><td>금액</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td><td></td><td colspan="2">V</td></tr>
</table>

위와 같이 국내학술회의에 참여코자 하오니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학술회의(전시회) 프로그램 팜플렛(공식 일정표) 1부
2. 발표논문 사본 1부

년 월 일

확인자 연구책임자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21. 국내학술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국내학술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출 장 지				
학 회 명				
출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출장목적				
출 장 자	소속		성명	

출장결과

1. 일자별 주요 활동내용

월일	활동(수행)내용	비고

2. 학회(회의)의 학술적 의의, 연구동향/전망 등 시사점

3. 사진 등 참석 증빙자료

※ 위 내용 포함 별도 첨부 가능

붙임: 등록비 영수증, 발표자 명기 프로그램 사본 혹은 발표논문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국내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가자 성명_____ (인)

확인자(연구책임자) 성명_____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22. 단기해외연수 참가 지원 신청서

단기해외연수 참가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소속</td><td colspan="2"></td><td>연락처(연구실)</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과정 또는 직급</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참가자 역할</td><td></td></tr>
<tr><td colspan="2">주관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개최 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d>참가지</td><td></td></tr>
<tr><td colspan="2">참가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참가 프로그램 명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타 기관 또는 연구과제로부터
참가여비 지원 여부
(반드시 기재)</td><td>지원기관명 또는
지원연구과제</td><td>금액</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td><td></td><td colspan="2">v</td></tr>
<tr><td colspan="2">교비지원 신청 여부
(반드시 기재)</td><td colspan="4">☐ 신청 가능 및 예정
☑ 신청 불가능 (사유: ☐자격미비 ☐회수초과 ☐기타: _____)</td></tr>
<tr><td colspan="2">참가 등록비</td><td></td><td>여비 보조 (사업단 기재)</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 단기해외연수에 참여코자 하오니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단기해외연수 참가계획서 1부
2. 초청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자 : _____(인)
지도교수 : _____(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팀) 귀하

[별지 서식] 23. 단기해외연수 참가계획서

단기해외연수 참가계획서

Ⅰ. 단기해외연수 개요

1. 참가목적 및 필요성

2. 단기해외연수 주제 및 내용

3. 단기해외연수 규모 및 성격

4. 단기해외연수 참가 시 수행내용

5. 참가 세부 일정(별지사용 가능)

[별지 서식] 24. 단기해외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

단기해외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

연수프로그램명	국문			
개최 장소	참가국		도시명	
주관 기관			참가자 수	
참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교비지원액				
참 가 자	소속		성명	
단기해외연수 참가 내용	1. 同 연수에 참가 수행한 사항: 2. 同 연수의 학술적 의의: 3. 同 연수분야의 연구동향 및 전망: 4. 同 연수분야의 국내현황 및 수준: 5. 기타 건의 사항			

첨 부 : 1. 항공료 영수증 사본 1부
2. 출입국일자가 표기된 여권 사본 1부
3. 발표자 이름이 명기된 프로그램 신청서 사본 1부
4. 등록비 영수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참가경비 지원을 받아 단기해외연수에 참석하고 그 활동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참가자 성명_____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팀) 귀하

[별지 서식] 25. 장기해외연수 신청서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

결재	지도교수	주임교수	사업단장

결재	담당	팀장	처장

행정부서 확인	학술정보팀	주거운영팀	예비군대대	통신실	교무팀	산학협력팀

인적사항	■ 소속 :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 전공 : ■ 학번 : ■ Q/E Pass : 년 월 ■ 성명 : ■ 병역 사항 : 병역필, 미필, 기타(면제)
해외연구연수	■ 기관명 : ■ 주 소 : ■ 연락처 : E-mail :
기간	■ 연수기간 : ~
연구활동계획	■ 연구 과제명 ■ 해외 연구활동 계획(상세내역 별지 사용) :
지도교수 의견	지도교수 : (인)

위와 같이 BK21사업과 관련하여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의 해외 연구(연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인)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장기해외연수 Program 협정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영남대학교 교무처장(귀하)

[별지 서식] 26. 장기해외연수 연수계획서

장기해외연수 연수계획서

1. 활동 계획

- 참가목적
- 연구 주제 및 내용
- 장기해외연수 참가 시 수행 내용

(반드시 세부 일자별(일정별)로 상세하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할 것)

2. 공동 연구 대상

3. 소요 경비

작성하지 말 것

4. 본 사업단 연구와 교육과의 연관성

5. 연수결과 활용 방안

[별지 서식] 27. 장기해외연수 신청 대학원생 선발 평가표

20 학년도

장기해외연수 대학원생 선발 평가표

지 도 교 수	대학		학과	
	성 명	(서명/인)		
대 학 원 생	성 명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학기
			학 번	
수 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평 가 항 목		평 가	비 고	담 당
학업 성적 (50%)	평균 성적	□ 50 □ 30 □ 10	학과 성적(직전 학기)	지도교수
연구 능력 (25%)	연구 실적	□ 25 □ 15 □ 5	학위논문,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지도교수
외국어 능력 (25%)	평균 성적	□ 25 □ 15 □ 5	최근 2년 공인어학성적 및 그에 준하는 어학 능력	지도교수
종합 평가		**총점:** **□ 지원 가 □ 지원불가**	지원 여부 결정	지도교수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체체를 유지하여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귀하

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BK21 지원대학원생으로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선발결과	可	사업단(팀)장 (인)	否	사업단(팀)장 (인)

[별지 서식] 28. 장기해외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장기해외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연수프로그램명	국문			
개최 장소	참가국		도시명	
주관 기관			참가자 수	
참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교비지원액				
참 가 자	소속		성명	
장기해외연수 참가 내용	1. 同 연수에 참가 수행한 사항: 2. 同 연수의 의의: 3. 일자별 활동 내역(별지사용 가능) : 장기해외연수 참가 시 수행 내용 **일자별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첨 부 : 1. 항공료 영수증 사본 1부
2. 출입국일자가 표기된 여권 사본 1부
3. 프로그램 신청서 사본 1부
4. 등록비 영수증 사본 1부
5. 수료 증명서

위와 같이 참가경비 지원을 받아 장기해외연수에 참석하고 그 활동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참가자 성명_____ (인)

BK21 사업 영남대학교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29. 해외 학자 초빙 활용 계획서

해외 학자 초빙 활용 계획서

1. 추진 목적

2. 해외 학자 활용 계획

3. 예산

	실행 예산	산출 근거 및 지급 기준
강연료	원	대학의 자체 규정 의거
여비 및 체제비	원	〃
총액		

첨부: 이력서 1부

위와 같이 해외 학자 초빙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단장: 손승회 (인)

영남대학교 BK21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귀하

[별지 서식] 30. 해외 학자 초빙 결과 보고서

해외 학자 초빙 결과 보고서

<table>
<tr><td>강연 제목</td><td colspan="4"></td></tr>
<tr><td>강연자</td><td>성명</td><td></td><td>소속</td><td>대학 학부(과)</td></tr>
<tr><td>초빙 결과</td><td colspan="4">참가인원: 명 (대학원생: 명, 교수: 명)</td></tr>
<tr><td>첨부 자료</td><td colspan="4">강연문 1부, 여권 사본 1부</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해외 학자 초빙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단장: _____ (인)

영남대학교 BK21 글로컬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귀하</td></tr>
</table>

[별지 서식] 31.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학술대회 발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학회(학술회의)명 :

▣ 개최기관(국가) :

▣ 개최기간 :

▣ 발표논문 제목 :

▣ 참가자 :

<점검사항>

① 학회(학술회의)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학술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③ 누가 이 학회(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④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⑤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날짜, 회의날짜,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및 장소 등)가 올바른 방식으로 제공됩니까?

→

20 년 월 일

참가 대학원생: (인)

지도교수: (인)

사업단(팀)장: (인)

[별지 서식] 32.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논문 투고)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학술지명 :

▣ 발행기관 :

▣ 논문제목 :

▣ 투고(예정)일자 :

▣ 투고자 :

<점검사항>

①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②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③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④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⑤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

20 년 월 일

투고 대학원생: (인)

지도교수: (인)

사업단(팀)장: (인)